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서학원 정관」 제83조에 의하여 동서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의 구성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수 평의원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의 평교수 중 총장이 추천하는 2인의 교수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01.> <개정 2018.05.11.>
2. 직원 평의원은 3년 이상 재직한 8급 이상의 직원 중 총장이 추천하는 1인의 직원과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직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01.> <개정 2018.05.11.>
3. 학생 평의원은 2인을 두며 동서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되, 동서대학교 총학생회장 과 총대의원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3.01.>
4. 학외 평의원 2인은 외부인사 중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③ 학생 평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9-2-1-2 제9편 위원회

2.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본조 전부 개정 2016.03.01.]

제 3 조(임원) ① 평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평의회의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정교수 직급을 가진 자 중 평의원이 복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 1인을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법인의 협의체 구성시 평의회의 대표자가 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제 4 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부 개정 2016.03.01.]

제 5 조(평의원 추천 및 위촉) ① 평의회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제 2 조의 각 기관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기관은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 평의원 후보자를 원칙적으로 단수 추천하고, 예외적으로 복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② 총장은 추천받은 평의원 후보자를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추천 기관에서 복수 추천을 하였을 경우 평의원 후보자 중 제2조 제1항의 구성인원에 따라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6.03.01.>

③ 임기 중 사임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각 기관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후임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이후 1주일 이내 후임 평의원을 단수 추천하여야 한다. 총장은 추천된 평의원 후보자를 평의

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03.01.>

제 6 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01.>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 7 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또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3.01.>
- ④ 평의원회를 소집할 경우 최소 7일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회의개최 및 목적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01.> <개정 2018.03.01.>
- ⑤ 회의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07.12.01.>
- ⑥ 본 회의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8.03.01.>

제 8 조(회의사항 통보·공개 및 재심요청) ①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교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은 대학운영에 반영한다. <개정 2007.12.01.>

- ② 교무위원회에서는 평의원회가 심의한 안전에 대하여 15일 이내 서면사유를 첨부하여 재심

9-2-1-4 제9편 위원회

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01.>

③ 평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요구한 안전에 대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심의안을 확정하고 교무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7.12.01.>

④ 의장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본 회의의 결과를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3년간 공개한다. <개정 2016.03.01.> <개정 2018.03.01.>

제 9 조(위원회) 평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의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9 조의 2(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평의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의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법인 동서학원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7.12.01.]

제 10 조(자료제출) 평의위원회 의장은 안전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평의원의 해임) 평의원 임기 중 평의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 평의위원회 의장의 청구에 의해 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조(세부사항) 평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제정규정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교무회의” 를 학칙의 정식명칭인 “교무위원회” 로 정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